「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	비고
제2조(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	제2조(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	○특송물품 수
은 다음과 같다.	은 다음과 같다.	입통관고시 와 용어통일
2. "특급탁송업체"(이하 "특송업체"라 한다)	2. "특송업체"란 「관세법」(이하 "법"이라	- 특급탁송업체
란 외국무역선·외국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	한다)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	→ 특송업체
량을 이용하여 상업서류 또는 그 밖의 견품	게 등록된 업체를 말한다.	
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		
「관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22조제		
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된 업체를		
<u>말한다.</u>		
3. "정식통관절차"란 <u>간이통관절차</u> 적용대상	3 <mark>목록통관절차</mark>	○통관절차의 종류를 명확히
이외의 물품의 수출통관에 적용하는 절차를		하기 위해 용어
말한다.		변경
<u><신 설></u>	4. "간이수출신고"란 정식통관절차 중 신고	- 간이통관절차→ 목록통관
	항목을 간소화한 수출신고를 말한다.	절차

현 행	개정안	비고
4. " <u>간이통관절차</u> "란 개인용품, 무역통계에	<u>5.</u> " <mark>목록통관절차</mark> "	- 간이수출신
<u>계상되지 아니하는</u> 물품 또는 관세환급대상	반영되지 않는	고 명확하게 정의
이 아닌 물품으로서 정식통관절차를 필요로		0-7
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통관에 적용하는 <u>간이</u>	<u>예외적인</u>	
<u>한</u> 절차를 말한다.		
5. "간이통관목록"이란 <u>특급탁송</u> 수출물품의	6. "통관목록"목록통관절차에 따른	
수출신고자료에 갈음하는 목록을 말한다.		
<u>6.~12.</u> (생 략)	<u>7.∼13. (현행 제6호∼제12호와 같음)</u>	
13. "전자상거래 업체"란 사이버몰(컴퓨터	<u><삭 제></u>	ㅇ 개정조문에
등과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		따른 용어 정리
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)을		
이용하여 전자상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를		
말한다.		
14. "전자상거래 수출업체"란 제13호에 의한	<u><삭 제></u>	
전자상거래 업체 중에서 수출신고서상 거래		
구분 15(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출물품)로 신		
고한 자를 말한다.		

현 행	개정안	비고
<u><신 설></u>	14. "전자상거래 간이신고 시스템"이란 전자	
	상거래 물품의 수출신고 시 항목을 간소화	
	한 신고 시스템을 말한다.	
<u><신 설></u>	15. "수출목록 변환시스템"이란 물품의 배송	
	정보를 수출신고로 변환하는 시스템을 말한	
	<u>다.</u>	
제33조의2(보세판매장 수출신고) 법 제196조	제33조의2(보세판매장수출신고)	
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		
생산(제조·가공·조립·수리·재생 또는 개조하는		
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된 물품을 판매하는		
경우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별표 수출신고서		
작성요령 <u>(1)갸항에</u> 따라 수출신고서 기재 항	<u>(1)</u>	
목 중 일부 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		
다만,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		
제외한다.		

현 행	개정안	비고
제34조의1(<u>외국무역선(기) 신고</u>) 외국 운항	제34조의2(<u>외국무역선 신고</u>)	ㅇ 선박만 적용
중인 <u>내국적 외국무역선(기)</u> 을 매각하여 국	<u>대한민국 국적 외국무역선을</u>	
내로 다시 입항하지 않고 현지에서 인도 <mark>하고</mark>	<u>하려는</u>	
<u>자 하는</u> 경우에는 수출자가 수출 후 대금수		
령 후 30일 전까지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		
와 수출실적보고서(수출신고서 양식 사용) 등		
신고자료를 첨부하여 서울세관장에게 제출하		
여야 한다.	,	
제35조(잠정수량신고·잠정가격신고 대상물	제35조(잠정수량신고·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	ㅇ전자상거래 ᄼᅕᄆᄑ <u>ᅱᅱ</u>
품의 수출신고) (생 략)	의 수출신고) ① (현행과 같음)	수출물품 잠정 가격신고 별도
1.~6. (생 략)	1.~6. (현행과 같음)	규정
<u><신 설></u>	7. 위탁판매 수출물품	
<u>7.</u> (생 략)	8. (현행 제7호와 같음)	
<u><신 설></u>	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 및 제7	
	호에 따른 물품은 수출신고 시에 적재예정	

현 행	개정안	비고
	금액을 신고하고 수출 후 판매금액이 확정	
	되는 때 또는 판매 후 대금입금일로부터 30	
	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수	
	출신고 정정신청서로 실제 공급한 금액을	
	신고할 수 있다.	
제35조의2(전자상거래 물품의 <u>수출신고</u>) 수출	제35조의2(전자상거래 물품 <u>등의 간이수출신</u>	ㅇ 전자상거래
하려는 물품 가격이 200만원(FOB 기준) 이하	<u>코</u>) ①	수출물품 등의 간이수출신고
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		규정
우에는 별표의 "수출신고서 작성요령" (1)하	<u>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.</u>	
항에 따라 수출신고서 기재항목 중 일부 항		
<u>목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 다만, 제7조		
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		
한다.		
1. 전자상거래 수출업체가 수출하는 물품	1. 수출신고서상 신고구분 E(전자상거래 간	
	이수출신고)로 신고하거나 전자상거래 간이	
	신고 시스템으로 신고하는 전자상거래 수출	

현 행	개정안	비고
	<u>물품</u>	
2. 전산연계방식(이하 "전자상거래 수출신고	2. 수출목록 변환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전	
플랫폼"이라 한다)으로 신고하는 전자상거	<u>자상거래 수출 물품 등</u>	
래 수출 물품		
<u><신 설></u>	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는 별표의 수출	
	신고서 작성요령 (1)하에 따라 수출신고서	
	기재항목 중 일부 항목을 기재하지 않을 수	
	<u>있다.</u>	
<u><신 설></u>	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는 별표12의 수	
	출목록 변환시스템을 통한 수출신고서 작성	
	<u>요령에 따른다.</u>	
제35조의5(전자상거래 물품의 국외반출신고	제35조의5(전자상거래 물품의 국외반출신고	
에 관한 특례) 외국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	에 관한 특례)	
물품을 반입한 후 사용소비신고 등 절차를 거		
쳐 국내로 수입하지 아니하고 해외 개인 구매		
자의 주문에 따라 국외로 물품을 반출신고하		

현 행	개정안	비고
는 경우에는 별표의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(1)		
<u>냐항</u> 에 따라 수출신고서 기재 항목 중 일부	<u> </u>	
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		
- 10기 기시트 기 기의	레이카 프로토카 코드	、ついたラ ハー
제3장 <u>간이통관</u> 절차	제3장 <u>목록통관</u> 절차	○ 정식수출신고 이외 통관절치를
게 2C 코 / 기시스 추시 기 이 어 게 2.4C 코 게 4칭 게	게 2C Z / 모르트	एक्ने निभन
제36조(<u>간이수출신고</u>) ① <u>영 제246조제4항제</u>	제36조(목록통관) ① 영 제246조제4항제1호,	용어 변경
<u>3호 및 제5호</u>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<u>제3호 및 제5호</u>	- 간이통관절차 → 목록통관
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송품장, 별지 제6호 서		절차
식의 (검사대상) <u>간이수출통관목록(이하 "간</u>	<u>통관목록(이하 "통관목</u>	
<u>이통관목록등"이라 한다)</u> 또는 우편물목록을	록등"이라 한다) 세관장에게	
<u>제출</u> 하는 것으로 <u>수출신고를 대신할 수 있</u>	제출법 제241조제1항의 수출신고	
다. 다만, 법 제226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	를 생략할 수 있다	
제외한다.		

현 행	개정안	비고
제37조(<u>간이통관목록자료</u> 전송) ① 특송업체	제37조(<u>통관목록자료</u> 전송) ①	
는 <u>간이수출신고대상물품</u> 에 대하여 별지 제6	-통관목록전송 대상물품	
호서식의 (검사대상) <u>간이수출통관목록</u> 자료	<u>통관목록</u>	
(이하 "간이통관목록자료"라 한다)를 전자문	(" <u>통관목록자료</u> ")	
서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다. 다만, 수		
출실적 인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<u>간</u>	<u>통관</u>	
이통관목록자료 기재항목 중 사업자등록번호,	목록자료	
세번부호(HSK 10단위)를 추가로 기재할 수		
있다.	.	
② 제1항에 따른 <u>간이통관목록자료</u> 는 운송수	② <u>통관목록자료</u>	
단의 출발시간 및 세관검사 소요시간을 고려		
하여 적재하기 전까지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		
야 한다.		
제37조의2(송품장 통관목록자료 전송) 송품장	제37조의2(송품장 통관목록자료 전송)	
방식의 <u>간이수출</u> 신고인은 송품장을 별지 제	목록통관	
17호 서식의 전자문서로 통관시스템에 제출할		

현 행	개정안	비고
수 있다.	<u>.</u>	
제38조(처리담당자의 지정 및 검사대상 선별)	제38조(처리담당자의 지정 및 검사대상 선별)	
① 세관장은 <u>간이수출</u> 신고물품에 대한 통관	① <u>목록통관</u>	
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특송업체별, 주		
기별(예, 주·월별)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		
운영할 수 있다.		
② 세관장은 <u>간이통관목록 등</u> 이 서류로 제출	② <u>통관목록등</u>	
된 경우 신고서류를 확인하여 <u>간이수출신고</u>	목록통관	
요건, 반출사유 및 가격 등을 참고하여 검사		
대상물품을 선별할 수 있다.		
③ <u>간이통관목록자료</u> 로 신고하는 물품에 대	③ <u>통관목록자료</u>	
한 검사대상선별은 통합위험관리시스템에서		
무작위 또는 담당자의 수작업 방식으로 선별		
할 수 있다.	,	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	

현 행	개정안	비고
제39조(<u>간이수출</u> 신고물품의 심사) 심사자는	제39조(<mark>목록통관</mark> 신고물품의 심사)	
<u>간이수출</u> 신고물품에 대하여 <u>간이통판목록</u>	<u>목록통관</u> <u>통관목록</u>	
등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<u>심사하여야</u> 하며, <u>간</u>	<u>심사해야</u> , <u>통</u>	
<u>이통관목록자료</u> 에 의한 신고 물품은 검사대	관목록자료	
상으로 선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심		
사를 생략할 수 있다.		
제40조(<u>간이수출</u> 신고물품의 검사) 검사자는	제40조(<mark>목록통관</mark> 신고물품의 검사)	
검사대상물품으로 선별된 물품에 대하여는 <u>간</u>	<u>통</u>	
<u>이통관목록</u> 등 서류에 의하여 현품검사를 하	<u> 관목록등</u>	
여야 한다. 다만, <u>간이통관목록자료</u> 에 의한	, <u>통관목록자료</u>	
신고물품은 검사대상 <u>간이수출통관목록</u> (별지	<u>통관목록</u>	
제6호 서식)을 전산출력하여 현품검사를 하여		
야 한다.		
제41조(<u>간이수출</u> 신고물품의 심사·검사결과	제41조(<u>목록통관</u> 신고물품의 심사·검사결과	
등록 등) ① 세관장은 <u>간이통관목록등</u> 또는	등록 등) ① <u>통관목록등</u>	

현 행	개정안	비고
전자문서 신고물품에 대한 심사·검사 결과 <u>간</u>	목	
<u>이수출신고</u> 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	록통관	
이상이 있는 경우 <u>간이통관목록등</u> 서류에 신	<u>통관목록등</u>	
고취하표시를 하거나 전산등록하여 직권 신고		
취소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.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
③ 세관장은 <u>간이통관목록</u> 등 또는 전자문서	③ <u>통관목록</u>	
신고물품을 심사·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물		
품에 대하여는 <u>간이통관목록 등</u> 에 고무인(별	<u>통관목록등</u>	
표2, 별표5)을 날인하거나 전산등록하여 신고		
수리할 수 있다.		
제42조(우편물목록의 특례) ① 세관장은 <u>간</u>	제42조(우편물목록의 특례) ① <u>목록</u>	
<u>이수출신고대상</u>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물목록	<u>통관신고대상</u>	
의 제출, 심사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. 다		
만,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	_,	
편물목록을 제출받아 검사를 할 수 있다.		

현 행	개정안	비고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
제44조(적하목록에의 같음 등) ① 특송업체 등은 <u>간이통관목록자료</u> 를 전송하여 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출항 적하목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<u>간이통관목록</u> 등 서류제출신고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44조(적하목록에의 같음 등) ① <u>통관목록자료</u>	
② 제1항에 따른 <u>간이수출신고수리물품</u> 에 대하여는 제2장 및 제4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	② <u>신고수리물품</u> 	
제48조(적하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수출 물품의 적재 등) ① (생 략) ② (생 략) <신 설>	제48조(적하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수출 물품의 적재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수출목록 변환시스템을 통한 적 재이행신고로 출항적하목록 제출을 갈음한	○ 수출목록 변환 시스템을 통한 적재이행절차 신설

현 행	개정안	비고
	다.	
[별지 제6호서식] [검사대상]간이수출통관목록	[별지 제6호서식] [검사대상]통관목록	용어변경에 따라 서식명 수정
[별지 제17호서식] 송품장 간이수출 신고[수리]서 (생 략) 위와 같이「관세법」제241조와「수출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」제37조의2에 따라 송품장에 의한 간이수출을 신고합니다.	[별지 제17호서식] 송품장 통관목록수출 신고 [수리]서 (현행과 같음)	용어변경에따라 서식명수정

현 행	개정안	비고
<신 설>	[별표 12] <u>수출목록 변환시스템을 통한 수출신고</u> <u>서 작성요령</u>	신규 시스템 이용한 신고시 신고서 작성요령 추가